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포장일자,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표시사항)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 략) 7. <u>포장일자</u> ②·③ (생 략)	제3조(표시사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포장일자,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